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일자 : 2003. 3. 10.

제출자 : 사 천 시 장 1 .

개정이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일부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골자

3. 법적근거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절차이행

가. 입법예고 : 2002.12. 4. ~ 2003. 1.13

- 예고방법 : 신문게시 공고(경남일보외 2개사)

- 의견제출 : 없음

나. 무상양여된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승인절차 이행

[경남도 주택58500-10347(2003. 3. 5).]호에 의거 사전승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토지의 가격)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여러필지를 합하여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합하여 면적으로 나눈 가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집단이주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발췌내역

사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증개정조례(안)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第7條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施行) ①住居環境改善事業은 市長등이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관한 事業은 住民이 施行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住居環境改善事業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の 申請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韓住宅公社 또는 都市開發事業을 事業目的으로 하거나 事業種目으로 하여 設立된 公法人(이하 "大韓住宅公社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 第6條第1項第3號에 관한 事業중 共同住宅 및 그 附帶·福利施設의 建設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2.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市長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韓住宅公社등을 포함한다. 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이 施行하는 住居環境改善事業은 이를 都市計画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으로 보며, 그 施行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都市計画法 第4條 내지 第9條·第27條·第28條·第83條·第87條 및 第88條와 都市再開發法 第6條, 第27條,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1995.12.29, 1997.12.13>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住宅建設을 目的으로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9.12.28>

第6條 (住居環境改善計劃의 수립등) ①市長등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環境改善地區의 指定告示가 있는 날부터 1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住居環境改善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住居環境改善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2.13>

1. 土地利用計劃
2. 道路, 上·下水道 기타 公共施設의 整備에 관한 사항
3. 住宅의 建設 및 그 附帶·福利施設에 관한 사항
4. 建築物의 存置·修繕·増築·改築·撤去등 改良방법 및 그 대상
5. 山沙汰·浸水등 災害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化粧室·託兒所·共同作業場등 共同利用施設의 확충 기타 住民의 所得源 開發에 관한 사항
7. 所要事業費의 推定 및 그 調達方案에 관한 사항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環境改善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市長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居環境改善計劃을 수립 또는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과의 協議 및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의 의견을 聽取하여 그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住居環境改善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區에 대한 住居環境改善計劃의 내용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都市計劃法 第21條의 規定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市長등이 住居環境改善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住居環境改善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項의 決定·變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市長등은 住居環境改善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變更內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市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住居環境改善計劃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滿了 이전에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2年の 범위내에서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9.12.28>

⑦市長등이 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住居環境改善計劃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住居環境改善地區의 지정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13>

第11條 (國公有地의 無償讓與등)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住居環境改善地區안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住居環境改善計劃이 告示된 날부터

중전의 用途가 廢止된 것으로 보며,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國公有財産의 管理 및 處分에 관한 關係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事業施行者에 無償으로 讓與된다. 다만, 國有財産法 第4條第1項 및 地方財政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중 公共用 또는 公用에 사실상 사용되는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財産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讓渡契約을 체결하여 住居環境改善計劃의 告示日 현재 代金の 일부를 受領한 土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住居環境改善地區안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는 住居環境改善地區의 指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住居環境改善事業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讓渡하거나 賣却할 수 없다.

第12條 (住居環境改善事業費의 負擔等)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 讓與된 土地의 使用收益 또는 處分으로부터의 收入은 住居環境改善事業 이외의 用途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地區에 사용하고 남은 收入金을 다른 住居環境改善地區에 사용할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28>

②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게 讓與된 土地에 대하여는 國有財産法 第44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韓住宅公社등이 住民에게 供給할 目的으로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告示 또는 承認公告로 용도가 확정된 土地는 제외한다.<신설 1999.12.28>

③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 讓與된 土地의 管理·處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大韓住宅公社등의 管理處分規程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5.25 대통령령 제16820호]

제10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7.10.30>

1. 청사·관사 또는 학교 시설용지
2. 철도·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 문화재·사적지 및 그 보호구역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및 보호수 생육지
5. 기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1·19, 1997·10·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보고수리
3.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연장 승인
4. 법 제6조제7항과 이 영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5.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의 기준 및 절차등의 승인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일의 승인
7.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에 대한 사업시행 요구
8.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승인
9.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사업의 변경 기타 조치의 명령

[전문개정 1991.12.31]